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0987
----------	-------

제안연월일 : 2026. 9.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2216996)	2026.02.24.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6.08.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6.08.26.)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이해식의원 (2219538)	2026.06.26.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6.08.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6.08.26.)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6. 8. 26.)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9. 1.)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2025년 6월 17일에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2026년 9월 16일에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완료될 예정이나,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미 활동기간을 한 차례 3개월 연장한 점을 반영하여 활동기간 연장 의결에 관한 단서 조항은 삭제함(안 제9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1년 이내에”를 “2027년 9월 16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단서에도”를 “제1항에도”로, “추가로 3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 부터 <u>1년 이내</u> 에 활동을 완료 하여야 한다. <u>다만, 이 기간 이</u> <u>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u> <u>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u> <u>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u> <u>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u>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 ----- ----- <u>2027년 9월 16일까지</u> ----- ----- <u>. <단서</u> <u>삭제></u>
② 조사위원회는 <u>제1항 단서</u> 에 <u>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u> <u>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u> <u>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u> <u>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u> <u>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u>추</u></u> <u>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u> <u>수 있다.</u>	② ----- <u>제1항에</u> <u>도</u> ----- ----- ----- ----- ----- ----- <u>3개월</u> ----- ----- <u>.</u>